

2022년도 12월 (1차)

임시주주총회 의안

[목 차]

■ 의결 사항

- I.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
- II.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
- III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2022년 12월 12일

(주)블루엠텍

의결 사항

의결사항 I.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

주요 내용

-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관련 당사 정관 개정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2조 (목적) 1~27 (생략) 28.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9. 각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중개업 30. 홈페이지 제작업 31. 온라인 광고 컨설팅업 31. 전문 인력 중개업(헤드헌팅 사업) 및 대행업 33. 각 호 관련 서버 관리업 34. 각 호 관련 빅데이터 응용 정보 제공 서비스 35.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업 및 대행업 36. 보안솔루션 제공업 37. 각 호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 38. 각 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39. 각 호 관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0. 전 각호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41~42 (생략)	제2조 (목적) 1~27 현행과 같음 28. 전 각호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29.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0. 각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중개업 31. 홈페이지 제작업 32. 온라인 광고 컨설팅업 33. 전문 인력 중개업(헤드헌팅 사업) 및 대행업 34. 각 호 관련 서버 관리업 35. 각 호 관련 빅데이터 응용 정보 제공 서비스 36.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업 및 대행업 37. 보안솔루션 제공업 38. 각 호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 39. 각 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40. 각 호 관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1~42 현행과 같음	제2조 목적의 순서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리
제2장 주식과 주권	제2장 주식	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 '주권'을 삭제
제9조 (신주인수권) (신설)	제9조 (신주인수권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8.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	IPO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의결 사항

의결사항 I.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11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	<p>제11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<u>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</u>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.</p>	<p>명의개서대리인 취급업무의 내용을 실제에 맞게 개정</p>
<p>제14조 (주주명부의 작성·비치) ②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(특수 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<u>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③ <u>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u></p>	<p>제14조 (주주명부의 작성·비치) (삭제) (삭제)</p>	<p>② 실무상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허용 안되는 부분(코스닥협의회에서 유관기관 협의 없이 표준정관에 넣어 배포한 내용) ③ 상법 상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명세에 이메일 주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나, 증권에서 100% 작성된 명세로 수신이 안되기 때문에 실무상 불가</p>

의결 사항

의결사항 I.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14조의2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의2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(삭제)</p>	<p>정관에 정총결산 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매년 이사회를 열어 기준일자를 확정해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확정된 기준일자를 통보해야 하는 등 실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</p> <p>③ 2항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</p>
<p>제19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(신설)</p>	<p>제19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.</p>	<p>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추가(예탁원의 권고사항)</p>
<p>-</p>	<p>부칙 이 정관은(정기/임시)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승인 요청 사항 : 당사 명의개서대리인 선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승인 요청 함.

■ 의결 사항

■ 의결사항 Ⅱ.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

▣ 상정근거 :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, 정관 37조 ①항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

▣ 주요 내용

- 경영투명성 확보: 소득세법 제 22조에 따른 퇴직소득한도인 임원 퇴직금 지급 배율 하향 조정 (3배수>2배수)
- 당사 정관 별지2의 "등기임원 퇴직금 지급규정"의 조항중 제 7조 [퇴직금 지급 기준]을 변경하고, 그외의 조항을 모두 준용함.

※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(안)

직책	5년미만	10년미만	10년이상
대표이사	300%	300%	300%
이사	150%	200%	300%
감사	150%	200%	300%

[현행]



직책	5년미만	10년미만	10년이상
대표이사/사장	200%	200%	200%
이사	100%	100%	100%
감사	100%	100%	100%

[변경]

▣ 승인 요청 사항 : 임원퇴직금 규정을 승인 요청 함.

의결 사항

의결사항 Ⅲ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상정근거 : 상법340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 및 제434조(정관 변경의 특별결의), 정관 10조 6(주식매수선택권)에 의거

주요 내용

-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

성명	부서/팀	직위	직책	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			
				주식의 종류	주식수	행사가격	입사일자
김준석	경영관리부	상무	부서장	보통주	30,000	15,000원/주	2022.05.30
김대현	경영관리부 재무회계팀	차장	팀장	보통주	10,000	15,000원/주	2022.05.30

-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

부여주식의 종류	부여방법	부여주식수	행사가격 주1)	행사기간	부여기준일	부여근거
보통주	신주발행형	40,000 주	15,000	2025.12.13~2029.12.11	2022.12.12 (임시주총 승인일)	당사정관 제10조의6

승인 요청 사항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요청 함.